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와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우주 국제협력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을 2025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우주 국제협력 기능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0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둔다.

별표 5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41조제9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0월 31일)

총계	3
일반직 계	3
5급	3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41조(한시정원) ① ~ ③ 삭제 ④ ~ ⑧ (생략) <u><신설></u>	제41조(한시정원) ④ ~ ⑧ (현행과 같음) ⑨ 우주 국제협력 기능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 <u>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u> 」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0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둔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4